

(첨부1)

## 표준 약관 및 규정 등 개정 주요내용

### I 개정사유

- 표준 약관과 규정 및 공시기준 중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을 개선
  - 금융당국 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 대상, 음부즈만 등을 통해 건의된 사항 및 개정필요사항 반영

### II 주요내용

#### 1 거래중지계좌 비대면 해지, 거래재개 신설

※ 관련규정 :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제3조

- (개정사유) 장기간 미거래로 거래가 중지된 계좌의 해지 또는 거래재개를 위해 고객이 반드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 존재
  - (개정내용) 예금주가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해지 또는 거래재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
    - \* (현행) 영업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→ (개정) 방문·유선·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등을 통하여 거래중지계좌의 해지(거래재개)를 신청한 경우
  - 단, 거래재개의 경우 신분증(사본) 및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FAX, E-mail 등으로 징구하여야 함

#### 2 온라인·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근거 마련

※ 관련규정 :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

- (개정사유)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고객이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가능하도록 한정하여 불편\* 야기
  - \*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애로 발생
- (개정내용) 고객이 영업점 방문 뿐 외에도 전화, 팩스, 기타 전자적 수단, 즉 온라인 또는 비대면을 통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케 함

#### 3 약관 및 규정 간 용어 통일화

※ 관련규정 :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,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제3조

- (개정사유) 약관 및 규정 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업무 혼선 야기
  - (개정내용) ① 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상 여신분류표\*, ②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출자격\*\*상 용어를 각 ① 계약금액내대출규정, ② 일반자금대출규정의 기 개정사항(법규살-160, '17.8.2) 반영하여 통일화
    - \* (현행) 계금부금적금 가입자중 미급부(대출)좌로서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에 대한 대출 → (개정) 계금부금적금 가입자중 미급부(대출)좌에 대한 대출
    - \*\* (현행)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→ (개정) 개인회생파산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아닐 것

#### 4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」 삭제

※ 관련규정 : 여신거래약정서

- (개정사유) 현행 여신거래약정서 상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동의서」는 '15.3.1.부터 시행된 「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」의 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\*의 사용으로 인하여 **사문화**되었음

\* 개인(신용)정보 표준 동의서는 개정시마다 별도 안내하고 있음  
⇒ 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와 파기 가이드라인 개정 및 Q&A안내(회원업무부, '15.1.21.), 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 및 파기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(회원업무부, '16.3.4),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 개정 안내(회원업무부, '17.9.20)

- (개정내용) 여신거래약정서 상 「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」 양식 삭제

### III 신·구조문 대비표 [첨부 2] 참조

### IV 시 행 일 : '18. 4. 20.

**표준 약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**

**【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】**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1조(적용범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이란 예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</p> <p>②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<b>제2조(이자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 월 중 일정한 날(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)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예금이자(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)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한다.</p> <p><b>제3조(거래중지계좌)</b>          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</p>	<p><b>제1조(적용범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한다)이란 예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.</p> <p>②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</p> <p><b>제2조(이자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통 예금의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 월 중 일정한 날(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)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익일에 원금에 더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예금이자(최초예금일 또는 전 결산기준일 익일)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이자를 셈합니다.</p> <p><b>제3조(거래중지계좌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중지계좌</p>	<p>경이체로 변경</p> <p>금융위 소 비자 음부 즈만, 자율</p>

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 또한,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~3.호 <생략>

<신설>

<신설>

**제4조(비과세종합저축거래)**

① 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.

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거래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이자를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<현행과 같음>

②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, 잔액조회,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③ 거래중지계좌에 대하여 거래처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 해지 후 고객 본인명의 계좌(자행·타행 포함)에 입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**제4조(비과세종합저축거래)**

① 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규제개혁  
사항 반영

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.

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.

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(무통장 입금 및 타행 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5조(거래제한)**

통장이 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”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.

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. 다만,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.

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(무통장 입금 및 타행 송금 포함)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**제5조(거래제한)**

통장이 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”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**【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】**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20조 여신거래조건외 변경	제20조 여신거래조건외 변경	
① ~ ②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	
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, 여신만기,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.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 서면, 전화, 팩스,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제3차 20대 금융관행 개혁대상  온라인·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근거 마련

## 【(근)저당권설정계약서 개정】

현 행 <개 정>	개 정(안) <별첨> 참고	비 고
		계 약 금 내 대 출 규 정 개정사항(법 규실 -160, '17.8.2) 반영

<별첨>

(현 행)

## 여 신 분 류 표

- 고객명 : 서명 또는 (인)
-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범위(해당란 □에 “√” 표기)

피담보채무의 범위	내 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자금대출	대출대상, 자금용도 등 대출 취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어음확인	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저축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소정이자(할인료)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할인의뢰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금액내대출	계금·부금·적금 가입자중 미급부(대출)좌로서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에 대한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예적금담보대출	당해 저축은행에 계·부금, 거치식예금·적립식예금, 표지어음에 가입한 자로서 동 예금 등을 담보 취득후 실시하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통장대출	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 대출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자금대출	주택의 신축·구입·개량(증축)·임차자금 용도의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외상채권대출	거래처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저축은행이 매입하여 평균만기일에 일괄지급하고 또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매입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만기일전에 대출을 취급하며, 이에 부대하여 회계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대출	상기 이외의 대출

(개 정)

## 여 신 분 류 표

- 고객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서명 또는 (인)
-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범위(해당란 □에 “√” 표기)

피담보채무의 범위	내 용
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자금대출	대출대상, 자금용도 등 대출 취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어음할인	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저축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소정이자(할인료)를 어음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는 형식으로 할인의뢰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금액내대출	계금·부금·적금 가입자중 미급부(대출)좌에 대한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예적금담보대출	당해 저축은행에 계·부금, 거치식예금·적립식예금, 표지어음에 가입한 자로서 동 예금 등을 담보 취득후 실시하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종합통장대출	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종합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도의 자동대출약정을 맺은 후 예금잔액을 초과한 인출청구시 약정한도 내에서 자동대출이 이루어지고 입금시 대출이 자동상환되며 매월 결산을 실시하고 이자를 납입하는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자금대출	주택의 신축·구입·개량(증축)·임차자금 용도의 대출
<input type="checkbox"/> 외상채권대출	거래처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저축은행이 매입하여 평균만기일에 일괄지급하고 또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매입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만기일전에 대출을 취급하며, 이에 부대하여 회계업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대출	상기 이외의 대출

## 【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개정】

현 행	개 정안	비 고
제3조(대출자격 등)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. 1. (생 략) 2. <u>개인회생·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은 것</u> 3. ~ 7. (생 략)	제3조(대출자격 등)-----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개인회생·파산선고 절차가 진행중인자가 아닐 것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	일반자금대출규정 개정 사항(법규실-160, '17.8.2) 반영

## 【여신거래약정서 개정】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<개 정>	<별첨> 참고	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개인(신용)정보 표준동의서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문화

## 【여신거래약정서 개정】

(현 행)

**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**

○○ 상호저축은행 귀중

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 취득하거나 만들어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동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.

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<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>

제공대상기관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전국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 등
- 신용조회회사 : 한국신용정보(주), 한국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등
- 이용목적 :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

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국적, 직업, 연락처 등
- 신용거래정보\*(본 계약 이전의 발생 거래정보 포함)
  - \* 대출(현금서비스 포함)내역, 채무보증내역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 및 당좌(가계당좌)예금 개설내역 등
- 신용능력정보 : 재산·채무·소득의 총액·납세실적 등

주)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, 관련된 발생사실 등)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.

<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내용>

조회할 신용정보 내용

- 조회할 신용정보 :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, 신용등급 등
- 조회목적 : 본 계약(본 계약 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)의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

<동의서 유효기간>

- 이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, 본 계약 소멸과 동시에 본 동의서의 효력도 소멸됩니다.
- 다만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 시까지 유효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\_\_\_\_\_서명 또는 (인)

\* 당사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\* 상기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.

(개 정)

<삭 제>